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75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03. 06.

김석한 의원 등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03. 1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4. 03. 21.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김석한 의원)

가. 제정이유

- 고성군 일반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 감량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감량기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3호
 - 예고기간: 2024. 3. 6.(수) ~ 3. 11.(월)[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 제4조) 정의 및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고성군 내 주소를 둔 주민이 주택 또는 사업장에 감량기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신청절차, 결정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감량기기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3. 21.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